

의안번호	2219284
의 퇴 인	맹성규의원
회 답 일	2026.10.1.
추 계 번호	26D2875
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기금의 용도)	평화·번영계정은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와 공존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, 평화·번영계정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에 사용함(제2항)	의무규정
		평화·번영계정 기금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(기금의 용도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평화·번영계정의 용도 규정(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)

- 개정안은 현행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평화·번영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평화·번영계정의 용도를 규정하는 내용임

- 개정안에 따라 평화·번영계정의 용도로 규정한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와 공존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, 평화·번영계정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이 남북협력기금 사업으로 추가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또한 평화·번영계정 기금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- 다만, 평화·번영계정에 배정되는 재원 규모 및 평화·번영계정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지출 규모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- 참고로 2026년 기준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: 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예산액
통일정책(1000)	통일기반조성(1033)	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(1033-402)	5,192
남북사회문화교류 (2000)	남북사회문화교류 (2040)	사회문화교류지원 (2040-401)	10,368
인도적 문제해결 (2100)	이산가족교류지원 (2140)	이산가족교류지원 (2140-403)	13,408
	대북인도적지원 (2141)	구호지원(2141-401)	112,230
		민생협력지원 (2141-402)	555,380
남북관계 기반구축 (3000)	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(3040)	경제교류협력보험 (3040-400)	3,739
		경협기반(무상) (3040-401)	220,905
		경협기반(유자) 3040-402	59,051
		경제교류협력대출 (3040-403)	7,332
		DMZ 평화적 이용 (3040-405)	6,214
	개성공단 조성(3041)	개성공단 운영대출 (3041-403)	2,819
		개성공단 기반조성 (3041-405)	3,485
남북협력기금 운영비 (7100)	기금관리비(7176)	기금관리비 (7176-201)	49
		위탁수수료 (7176-202)	2,100

		사업관리비 (7176-203)	73
기금간거래(9100)	기금간거래(9110)	공자기금예수원금상환 (9110-910)	303,000
		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 (9110-920)	71,567
여유자금운용(9700)	여유자금운용(9710)	통화금융기관 예치 (9710-970)	129
		비통화금융기관 예치 (9710-971)	50,733

자료: 통일부 사업설명자료 II-1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nabo.go.kr